

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58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11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12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규정 중 자치단체의 처리 의무가 없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업무를 삭제함.
(안 제6조)
- 나. 규제사무완화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삭제함.
(안 제4조, 안 제13조3호, 안 제15조제1항 및 안 제16조)
- 다.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영 별표 8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있어 이를 따르며 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.
(안 제17조, 별표 5 삭제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1993. 11. 18 조례 제1364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4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

- 조례안의 개정의안을 제출시는 관계있는 관련 조항의 법령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심의가 용이할 것이므로 차후는 첨부 제출할 것.

7. 심사결과

-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